

안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제정 1985. 4. 11 조례 제 343호
 개정 1988. 10. 20 규칙 제 482호
 전부개정 2013. 1. 16 규칙 제1353호
 일부개정 2014. 9. 16 규칙 제1399호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9. 1. 8 규칙 제15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삭제 <2014. 9. 16>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9. 16>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서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 9. 16>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9. 16]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정

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시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2013. 1. 16 규칙 제135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16 규칙 제1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8 규칙 제1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별표] 삭제 <2014. 9. 1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2. 18>

○ ○ 서

분류번호 (전화) . . .

수신 ○ ○ 학교장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시()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
기 통보하오니 30일이내에 붙임서식에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재적학교	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	증서학교:	기타사항	
	증서수여일자:		

붙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안양시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장학증서

○○학교 ○○ 제 ○학년

성 명

생년월일

위 학생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에 따라서 장학생
으로 선발된 사람이므로 이 장학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장학생		신청액				지급정지가 해제된경우 해제된사유
학 년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기타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12. 18>

(갑 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성명	한자()	생년월일	
----	-------	------	--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주 소	통/반	세대주	주 소	통/반	세대주
	/			/	
	/			/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기타 특기사항

3. 재정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 계

4. 관리기록

지원 ~ 선발	학교명		학년		전공학과	
	지원일자		선발일자		선발당시 학교성적	평균점(석차/)
장학금 지급	지급일	지급액	누계	지급일	지급액	누계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5. 학사관리

(갑 3)

연월일	적 요	연월일	적 요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6. 임용상황

임 용				임용대기	임용포기
일자	계급	직렬	기관(계단위까지)	(사유)	(사유)

7. 장학금 반납

(갑 4)

			지급총액			
연월일	반납액	잔 액	연월일	반납액	잔액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제15조 관련사항 기록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처번호 자택 () 학교 ()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분류번호 (전화) . . .

수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장학금 지급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장학생본인		지 급 일 자	지급액				수령인	비고
학생	성명		계	입학금	등록금	본인지급		

○ ○ 학교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분류번호 (전화) . . .

수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본인인적사항

성명	학과	학년	비고

2. ()년도 ()학기 (분기)말 성적

성 적 사 항				출 석 사 항	
과목	성적	과목	성적	구분	일수
				총수업일수	
				출석	
				결석	
				결석율(%)	
				기타특기사항 (상벌사항등)	
평균		석차	/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분류번호 (전화)

수신: 안양시장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 년	비고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0호 각 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

○ ○ 학 교 장 (직인)

